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8,721,000	18,861,630
일반회계	562,600,000	16,878,000
특별회계	66,121,000	1,983,630
공기업특별회계	46,393,000	1,391,790
수도사업특별회계	22,793,000	683,79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600,000	708,000
기타특별회계	19,728,000	591,840
수질개선특별회계	4,052,000	121,56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96,000	62,88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1,216,000	36,48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363,000	70,89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1,000	9,03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62,000	73,860
치수사업특별회계	4,990,000	149,700
기반시설특별회계	577,000	17,31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671,000	50,1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929,45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